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29
----------	-------

발의연월일 : 2026. 1. 8.

발 의 자 : 김정호·윤후덕·이연희
이성윤·서왕진·전진숙
박 정·이수진·임미애
최혁진·박해철·허종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는 대규모 발전사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하려는 제도임.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보급환경의 변화와 함께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가격 변동성이 커서 RPS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특히, 공급인증서 관련 발전사들의 자체 투자보다 외부 구매, RE100 기업(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는 글로벌 기업)과 수요의 경합,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물시장 공급인증서 가격이 상승하여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전사업자·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도록 하며, 보급의무대상자 등에게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를 기준금액 납부 또는 면제를 통하여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의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2조의5 및 제12조의14부터 제12조의21까지 신설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6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운영

17.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관리

18. 재생에너지 보급의무 지원

제12조의5제5항 중 “구매하여”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구매한 경우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12조의14부터 제12조의2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 안정적인 계약방식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이하 “계약시장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시장제도를 통하여 도입할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공고 총용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도록 5년 단위로 산정하여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계약 결과, 계약 수요 및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2.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현황 및 전망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원안보
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물량 등
5. 그 밖에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설비(이하 “소규모설비”라 한다)
2. 제12조의16에 따른 보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촉진
3. 산업·수출 경쟁력 및 안보강화
4. 그 밖에 계약시장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때 소규모설비의 효율적인 계약 참여와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다수의 소규모설비들을 모아서 하나의 통합 사업
자로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소규모설비 지원을 위하
여 종합적인 재생에너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이하 “재
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및 제45조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가 적합하게 유지되는 범위에서 같은 법 제2
조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전력구매자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계약자”라 한다)에게 계약시장제도에서
낙찰되어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매계약자가 구매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용량 선정 및 전망,
낙찰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 등 계약시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 정보, 재생에너지 공
급망 및 자원안보 등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
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15(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발전사업자,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목표관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목표관리대상자별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이하 “보급목표”라 한다)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목표관리대상자는 보급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급 관련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실적을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목표관리대상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목표관리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정·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목표관리대상자의 실적이 보급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목표관리대상자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목표관리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 내용, 목표관리대상자 명칭 등 관련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16(재생에너지 보급의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이하 “보급의무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보급하여야 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량”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보급의무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
2. 계약시장제도 공고 용량
3. 보급의무자의 보급실적
4. 자원안보 현황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급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17(보급의무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보급의무자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보급의무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신속하고 원활

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18(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의 보급대체이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대상자 및 보급의무자(이하 “보급의무자등”이라 한다)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등”이라 한다)에 미달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여 그 부족량에 대하여 보급대체이행 또는 면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급대체이행 금액을 납부하거나 보급대체이행이 면제된 보급의무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부족량만큼 보급의무등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보급대체이행 금액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한다.

제12조의19(재생에너지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제12조의16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18에 따른 보급대체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규모 및 위반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한다.

제12조의20(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이하 “계약시장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
 2.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 ② 계약시장관리기관은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시장제도 운영 및 제12조의21에 따른 발전정보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칙(이하 “계약시장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시장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1(재생에너지 발전정보 인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발전정보를 확인·인증하는 인증서(이하 “발전정보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계약시장관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시장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재생에너지원·발전량 및 발전기간 등을 확인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정보 확인·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계약시장제도 운영

5의3. 제12조의14제7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 정보, 재생에너지 공급망 및 자원안보 등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의4. 제12조의15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관리 운영

5의5. 제12조의16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의무 운영

5의6. 제12조의18에 따른 보급대체이행 운영·관리

5의7. 제12조의20에 따른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관리

5의8.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제33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임직원

3의3.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위원

제35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2조의15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2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급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5제5항 및 제12조의14부터 제12조의21까지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및 제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관련 효력) ① 제12조의7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발급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관련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제2항에

다른 공급인증서 발급기한까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 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관련 적용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중 의무공급량을 초과하여 공급의무자가 구매한 공급인증서의 경우 제12조의15에 따른 보급목표 및 제12조의16에 따른 보급의무량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의 종류와 이행 실적 인정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구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 15.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16. (생략)	제10조(구성된 사업비의 사용) -- ----- ----- -----. 1. ~ 15. (현행과 같음) <u>16.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u> <u>운영</u> <u>17.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관리</u> <u>18. 재생에너지 보급의무 지원</u> <u>19. (현행 제16호와 같음)</u>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등) ① ~ ④ (생략)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서를 <u>구매하여</u>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⑥·⑦ (생략) <u><신설></u>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u> <u>정하는 방식에 따라 구매한 경</u> <u>우에 한정하여</u> ----- -----. ⑥·⑦ (현행과 같음) <u>제12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계</u> <u>약시장제도 운영 등) ① 기후</u> <u>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u> <u>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u>

고정가격계약 등 안정적인 계약방식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이하 “계약시장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시장제도를 통하여 도입할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공고 총용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도록 5년 단위로 산정하여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계약 결과, 계약 수요 및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2.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현황 및 전망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원안보
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물량 등

5. 그 밖에 재생에너지 보급 활
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
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
약시장제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계약
시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설비
(이하 “소규모설비”라 한다)

2. 제12조의16에 따른 보급의무
자의 의무이행 촉진

3. 산업·수출 경쟁력 및 안보
강화

4. 그 밖에 계약시장제도의 효
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
약시장제도를 운영할 때 소규
모설비의 효율적인 계약 참여

와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다수의 소규모설비들을 모아서
하나의 통합 사업자로서 참여
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 촉진
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4항에 따른 소규모설비 지원
을 위하여 종합적인 재생에너
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
하는 자(이하 “재생에너지 중
합서비스기업”이라 한다)를 지
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및
제45조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
도가 적합하게 유지되는 범위
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
업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
른 전력구매자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계약
자”라 한다)에게 계약시장제도
에서 낙찰되어 설치된 설비에
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게 할

<신 설>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은 구매계약자가 구매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2항에 따른 공고 용량 선정 및
전망, 낙찰 설비의 체계적인 관
리 등 계약시장제도를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재
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
정보, 재생에너지 공급망 및 자
원안보 등에 관한 통합정보시
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
른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15(재생에너지 보급 목
표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발전사업자,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이하 “목표관리대상자”
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목표
관리대상자별로 재생에너지 보

급목표(이하 “보급목표”라 한다)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목표관리대상자는 보급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급 관련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 받은 실적을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목표관리대상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목표관리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정·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목표관리대상자의 실적이 보급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목표관리대상자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에도

<신 설>

불구하고 목표관리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 내용, 목표관리대상자 명칭 등 관련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16(재생에너지 보급의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이하 “보급의무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보급하여야 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량”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보급의무 해제를

<신 설>

검토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
2. 계약시장제도 공고 용량
3. 보급의무자의 보급실적
4. 자원안보 현황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급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17(보급의무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보급의무자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보급의무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

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18(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의 보급대체 이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대상자 및 보급의무자(이하 “보급의무자등”이라 한다)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등”이라 한다)에 미달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여 그 부족량에 대하여 보급대체이행 또는 면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급대체이행 금액을 납부하거나 보급대체이행이 면제된 보급의무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부족량만큼 보급의무등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보급대체이행 금액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한다.

<신 설>

제12조의19(재생에너지 보급의무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

무자가 제12조의16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18에 따른 보급 대체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규모 및 위반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

<신 설>

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
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한다.

제12조의20(재생에너지 계약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
제도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재생에너지 계약
시장관리기관(이하 “계약시장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
지센터

2.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
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계약시장관리기관은 계약시
장제도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
시장제도 운영 및 제12조의21
에 따른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에 관한 규칙(이하 “계약시장

<신 설>

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계약시장규칙
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
약시장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1(재생에너지 발전정보
인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제31조(신·재생에너지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재
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신·재생

하여금 재생에너지 발전정보를
확인·인증하는 인증서(이하
“발전정보인증서”라 한다)를 발
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받으
려는 자는 계약시장관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시장관리기관은 제2항
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재
생에너지원·발전량 및 발전기
간 등을 확인한 후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재생에너지 발전정보 확인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
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신·재생에너지센터) ① -

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6. ~ 18. (생략)

②·③ (생략)

제33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3.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계약시장제도 운영

5의3. 제12조의14제7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 정보, 재생에너지 공급

망 및 자원안보 등에 관한 통

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의4. 제12조의15에 따른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관리 운영

5의5. 제12조의16에 따른 재생

에너지 보급의무 운영

5의6. 제12조의18에 따른 보급

대체이행 운영·관리

5의7. 제12조의20에 따른 계약

시장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관리

5의8.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6. ~ 1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의2.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u>
	<u>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계</u>
	<u>약시장관리기관의 임직원</u>
<u><신 설></u>	<u>3의3.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u>
	<u>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u>
	<u>체결·이행에 관한 사전심사</u>
	<u>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자</u>
	<u>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u>
	<u>정하는 위원회 위원</u>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35조(과태료)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부과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의2. 제12조의15제3항에 따른</u>
	<u>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u>
	<u>자</u>
<u><신 설></u>	<u>3의3. 제12조의16제3항에 따른</u>
	<u>보급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u>
	<u>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따르</u>
	<u>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u>
	<u>제출한 자</u>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